

의안번호	2216251
의 퇴 인	김원이 의원
회 답 일	2026. 3. 11.
추 계 번호	26A0161

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 추계)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매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작성·발간하는 경우 등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,000만원, 2030년 5,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 5,000만원(연평균 5,0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(안 제7조)	50	50	50	50	50	250	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(통상진흥 시책의 수립)	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의 조사에 따라 주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 및 통상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입규제 및 시장접근 관련 제도·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매년 작성·발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음(제3항제1호)	의무규정 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7조(통상진흥 시책의 수립)	○	○ (일부 추계) 안 제7조제3항제1호의 추가재정소요 중 무역장벽 보고서 작성·발간에 한해 추계함 -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경우 무역장벽 보고서 작성·발간과 달리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으며, 현 시점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범위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매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작성·발간하는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
 - 개정안의 내용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은 재량규정으로 현시점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범위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안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매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작성·발간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- 유사 연구용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무역장벽 보고서 작성·발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매년 5,000만원으로 예상됨
 - 유사 사례로는 “EU AI법의 TBT 쟁점과 대응방안 연구”(산업통상부,

2024년, 4,738만원), “글로벌 무역협정 추세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”(산업통상부, 2022년, 3,800만원) 등이 있음

[표 3] 무역장벽 보고서의 작성·발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(안 제7조)	50	50	50	50	50	250	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